

정책토론회 자료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

2007. 8. 10

김 재 진

 한국조세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요

□ 일 시 2007. 8. 10(금) 14:30~16:3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4:30~14:40 인사말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4:40~16:120 주제발표 및 토론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

- ▶ 사회자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 발표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토론자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부장  
서영경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  
송쌍중 한국납세자연합회 세정세계개혁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송태복 한국은행 국고팀장  
윤태화 경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  
정규언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가나다순)

16:20~16: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6:30 폐회

# 목 차

I. 서론 .....	1
II. 국세 및 지방세의 세금 납부현황 .....	4
1. 세금 납부방식 .....	4
가. 국세 .....	4
나. 지방세 .....	5
2. 신용카드 납부방식의 유형 .....	6
가. 가맹점 방식 .....	8
나. 신용공여 방식 .....	9
다. 카드론(신용대출) 방식 .....	10
3. 국세 및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실적 .....	11
가. 국세 .....	11
나. 지방세 .....	13
III. 외국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	15
1. 미국 .....	15
2. 영국 .....	19
IV. 국민여론조사 결과 .....	21
1. 조사개요 .....	21
2. 조사결과 .....	21
3. 시사점 .....	25
V. 도입시 고려사항 .....	27
1. 재정부담 및 세출 자금운영상 현금흐름 .....	27
가. 가맹점 방식 .....	27
나. 신용공여 방식 .....	27
2.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	28

3.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 .....	29
4. 『국고금관리법』과의 상충문제 .....	29
5. 카드사의 자금조달 능력과 참여 가능성 .....	30
6. 기존 전자납부제도의 활성화 .....	30
VI.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 .....	32
1. 기본방향 .....	32
2. 도입방안 .....	33
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주체: 『수익자부담의 원칙』 .....	33
나. 납부대상 세목: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우선 적용 .....	35
다. 납부세액의 범위: 일정금액 이하의 신고·고지분 .....	36
라.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대행기관』 설립 검토 .....	37
VII. 결론 .....	40
참고문헌 .....	45

## 표 목 차

<표 1> 연도별 총납부실적 대비 전자납부 비율 .....	5
<표 2>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지자체 현황('05. 1. 1 기준) .....	6
<표 3>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	9
<표 4>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참여 카드사 현황 .....	10
<표 5> 전자납부 방법별 국세 납부실적(2004~2007. 6) .....	12
<표 6> 카드론 방식에 의한 국세 납부실적 .....	13
<표 7>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현황(2005년 기준) .....	14
<표 8> 미국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서비스 수수료 현황 .....	16
<표 9>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현황(미국) .....	18
<표 10> 미국과 영국제도의 비교 .....	20
<표 11> 2006년도 월별 국세수입 추이 .....	28
<표 12> 유형별 전자납부 건수 및 금액(2006 기준) .....	28
<표 13> 2006년 세목별 신고·고지건수 및 납부세액 .....	35
<표 14> '06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대상 카드수수료 부담 .....	36
<표 15> 신고 또는 고지금액 기준 비중 .....	36
<표 16> 신용카드 납부한도액 설정시 카드수수료 부담 .....	37

## 그림 목 차

[그림 1] 은행계 카드사의 결제구조(개방형) .....	6
[그림 2] 전업계 카드사의 결제구조(폐쇄형) .....	7
[그림 3] 가맹점 방식 납부 결제구조 .....	8
[그림 4] 신용공여 방식 납부 결제구조(서울시 등) .....	10
[그림 5]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절차(미국) .....	16
[그림 6] 국세의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 .....	22
[그림 7] 카드수수료의 국가 부담에 대한 찬반 견해 .....	23
[그림 8] 국세의 카드 납부방법 도입의 필요성 .....	24
[그림 9] 국세의 카드 납부 불필요 이유 .....	25
[그림 10] 국세수납 흐름도 .....	39

## I. 서론

- 1987년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국세청 훈령에 의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가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 그동안 추계과세에 크게 의존해 오던 세무행정에 부분적으로나마 합리적인 근거과세의 기반을 갖추게 됨
  - 우리나라가 처한 현금수수 관행과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수준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의 매출액과 소득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됨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 소비자, 카드회사 3자 간의 상호 검정 및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표현실화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됨
  
- 정부가 현금수취업종의 과표를 양성화하여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본격적으로 증가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됨
  - 소비자 중심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에도 정부는 가맹점에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를 수취할 것을 장려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함
  -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수취하여 세제상 얻게 되는 혜택보다는 현금을 수취하여 과표를 누락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음
  
- 정부가 1999년 9월부터 신용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점 대신 소비자들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1999년 9월부터 근로소득자에게 연봉의 1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고,

- 2000년부터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를 도입한 것이 소비자들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임
- 소비자 이외에도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를 적극 사용하도록 정책을 전개하였음
-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검사의 기초가 되는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을 1999년 4월 16일 개정하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자로서 공사, 물품 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예산지출 증빙을 위해 수취해야 하는 영수증의 종류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한정
  - 기업의 경우 1회의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경비지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만을 세법상의 지출 증빙으로 인정
- 정부가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국세나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납세자들 사이에 꾸준히 제기
- 정부는 1999년 9월부터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 도입
  - 2000년 1월부터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한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 행정자치부가 2000년 1월 신용카드사를 지방세 금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sup>1)</sup>를 개정한 것을

---

1) 제103조 (금고업무의 일부 대행) ①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은행법」에 의한 다른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계기로 서울시 등 여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 1997년 3월 경기도 의정부시가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최초로 도입

□ 이를 계기로 국세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법규 및 행정상 등의 문제로 도입이 지연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는 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
- 「국고금관리법」상 국고집중원칙과의 부조화,
- 국가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세출예산 운영상 문제점,
-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부담시 현금납부자와의 불형평 및 국가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제도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 국세의 경우 1999년 10월 재경부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세금 납부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보류기로 결정

- 2000년 초 각종 징수·납부 및 체납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인터넷과 전화(ARS)에 의한 전자납부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카드론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방안을 도입
- 하지만, 카드론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방안은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활용실적이 극히 미미

□ 최근에 국세도 지방세처럼 가맹점 방식 또는 신용공여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대두

-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주도하였으면서, 정부는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Ⅱ. 국세 및 지방세의 세금 납부현황

### 1. 세금 납부방식

#### 가. 국세

- 국세납부는 서면 또는 전자신고 후 자진납부,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 따른 고지분 납부, 체납세액 납부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국고수납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
  - 국세수납은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창구, 금융기관 전자납부(인터넷, ARS, ATM), 카드론,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sup>2)</sup>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sup>3)</sup>
    -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주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종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이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하여 고지분 납부, 전자신고분 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체납세액조회, 납부확인 등이 가능
  
- 최근에 들어서는 납세자들이 전자납부의 편의성을 점차 인식하게 됨에 따라 전자납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2) 홈택스는 납세자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핸드폰을 이용하여 세무신고, 고지, 납부, 민원증명, 세무상담 등 모든 국세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의 세무서비스임. 국세청에서 『국세민원창구』를 개별 납세자의 가정이나 사무실에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홈택스가 완비되면 납세자가 세무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과세자료제출 및 안내홍보 등의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ID/암호를 발급받아야 함. 또한 홈택스 중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세무대리정보관리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는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가 없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세무서에서 2개 공인기관(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음.

3) 체납세액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것도 가능

- 전자납부 건수는 2004년의 약 50만 8천건에서 2006년에는 138만건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 상반기에만 약 110만건을 기록
  - 총납부실적 대비 전자납부의 비율도 건수 기준으로 2004년의 3.6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상반기에는 약 12%로 증가
- 전자납부 금액은 2004년의 약 7조 8천억원에서, 2006년에는 26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 6월에는 상반기에만 18조원을 기록
  - 총납부실적 대비 전자납부의 비율도 금액 기준으로 2004년의 6.8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상반기에는 약 22.68%로 증가

<표 1> 연도별 총납부실적 대비 전자납부 비율

(단위: 건, 억원, %)

구 분	총 납 부		전자납부		전자납부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	13,897,699	1,141,912	508,088	78,079	3.66	6.84
2005	15,414,399	1,243,849	879,478	189,519	5.71	15.24
2006	16,230,050	1,334,473	1,385,510	260,748	8.53	19.53
2007.06	9,148,662	801,493	1,097,145	181,805	11.99	22.68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나. 지방세

- 지방세의 납부는 자치단체별로 금융기관, 전자납부시스템, 현금수납,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방안을 운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납대행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지방세를 수납하고,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전자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 오지 주민을 위해서 30만원 미만에 대하여 현금수납을 하고 있으며,
  - 2000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2>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지자체 현황('05. 1. 1 기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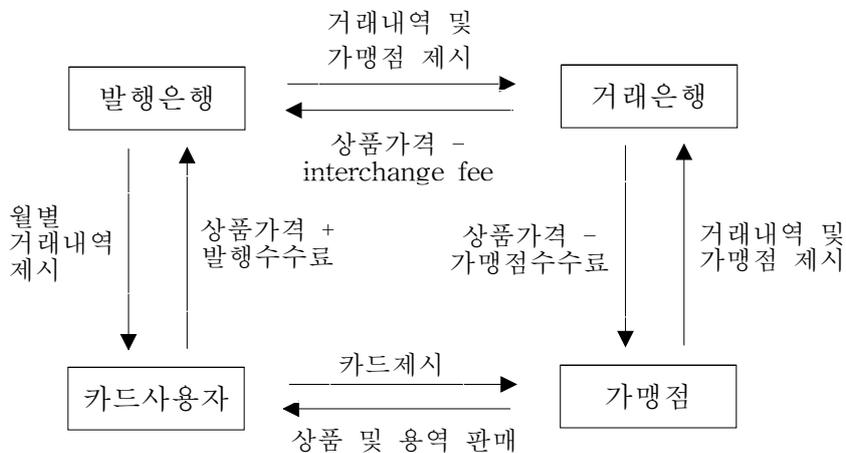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합계
가맹점 방식		21			8				45	74
신용공여 방식	25	9	16	8	5	5	5	5	39	117

주: 일부지자체의 경우 가맹점 방식과 신용공여 방식을 병행 운영중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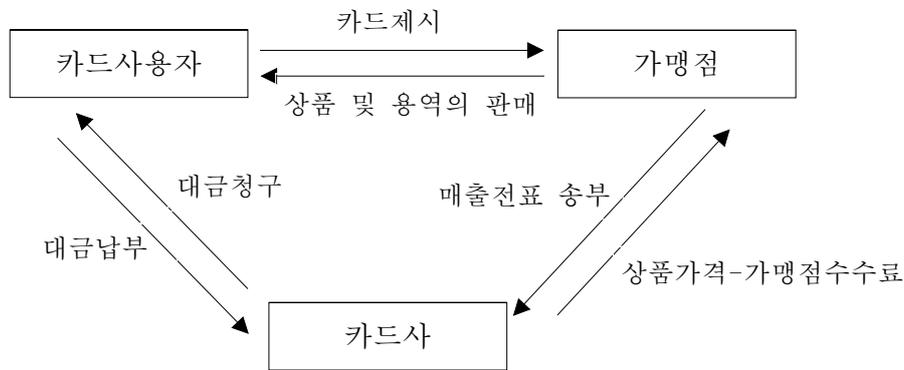
## 2. 신용카드 납부방식의 유형

- 우리나라에서 세금 납부가 아닌 일반 상거래에서의 신용카드의 결제구조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됨
  - 개방형은 은행계 카드사가 채택하고 있는 모형으로, 시스템 참가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스템을 구축
    - 결제과정에는 카드발급은행, 가맹점거래은행, 가맹점, 카드사용자 등 4 당사자가 참가
  - 폐쇄형은 삼성, LG 등의 카드 전업사가 채택하고 있는 모형
    - 결제과정에 가맹점, 카드사, 카드사용자의 3자가 참가

[그림 1] 은행계 카드사의 결제구조(개방형)



[그림 2] 전업계 카드사의 결제구조(폐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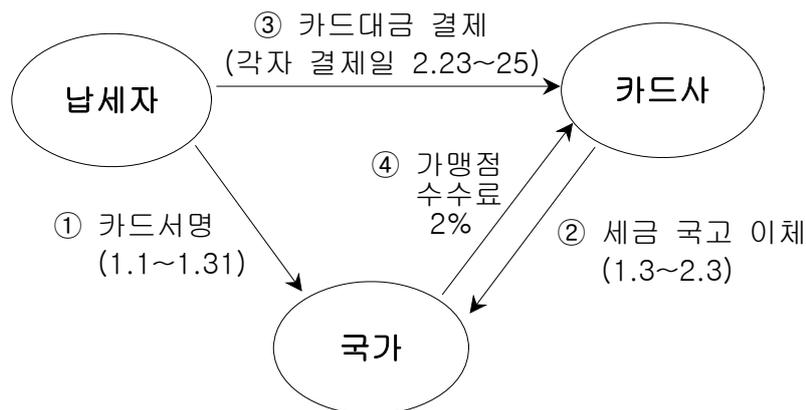
-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하면 결제단계에서 각자가 얻는 혜택(Benefit)에 따라 가맹점수수료(Merchant Fee), 은행간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 카드 발행수수료 등이 있으며, 현금서비스의 경우 이에 대한 이자성 수수료를 부담함
  - 가맹점수수료(Merchant Fee)는 가맹점이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우리나라는 업종에 따라 거래금액의 1.5~4.5%를 부담
  - 은행간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는 가맹점거래은행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대가로 카드발행은행에게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
  - 카드발행수수료(Issuing Fee)는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드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연회비에 포함
  -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카드소지자가 현금을 인출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성 수수료를 말함
  
- 현재 가맹점수수료는 업종에 따라 거래금액의 1.5~4.5%를 부과하며, 이 중에서 거래건당 90~100원을 부가통신망(VAN)사업자에게 지불함
  - 따라서 카드발급은행의 입장에서는 건당 거래금액이 클수록 수수료 수입이 증가함

- 국세/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가맹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맹점이 되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일반 상거래에서의 신용카드 결제구조와 상이함

가. 가맹점 방식

- 가맹점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가맹점이 되어 신용카드사에 약 1.5~2.0%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사는 카드결제일로부터 3~4일 후에 지방세를 지자체 금고에 입금하는 방식
  - 가맹점 방식은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가 그 운영을 제한
  - 가맹점 방식은 현행 재정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도입이 용이한 반면 가맹점수수료 부담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3] 가맹점 방식 납부 결제구조



<표 3>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구분	최저수수료율	최고수수료율
공과금(지방세 등)	2.0	2.5
비영리유통업	1.5	2.7
교육기관*	1.5	3.6

주: 유치원 및 사설학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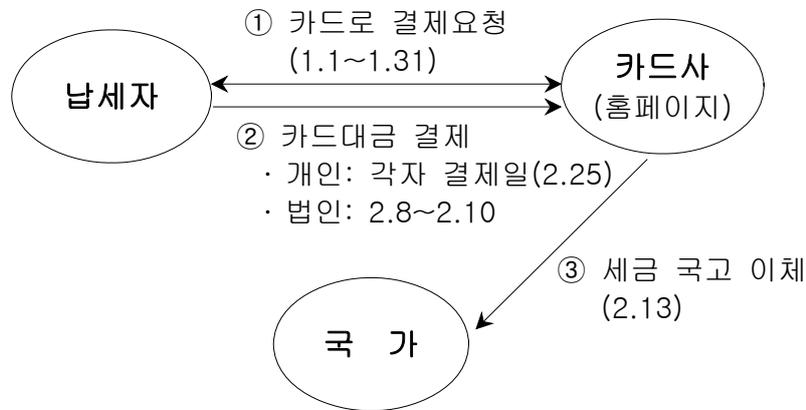
자료: 여신전문금융업협회('07. 3월 기준)

#### 나. 신용공여 방식

- 신용공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카드사는 카드결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서울시: 다음 달 13일)까지 징수한 지방세를 운영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방식
  - 카드사는 법인납세자로부터 월초에, 개인납세자로부터는 카드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수령하므로 법인납세자로부터 수령한 카드대금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 자금조달비용의 일부를, 할부(카드사별 비중 40~60%) 수수료에 의해 나머지 비용을 보전<sup>4)</sup>
  - 신용공여 방식은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없으므로 제도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 정부의 입장에서는 2~3개월의 신용공여기간 제공에 따른 세입지연으로 예산부족, 이에 따른 차입금 이자비용의 부담과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재정운영상의 문제가 발생
  -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여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의 참여가 불확실하다는 운영상의 한계가 있음

4) 신용공여 방식은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이 미미한 상태이므로 가맹점 방식을 일부 채택하고 있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카드사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으며, LG카드의 경우는 시장점유율 확대 필요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림 4] 신용공여 방식 납부 결제구조(서울시 등)



<표 4>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참여 카드사 현황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3개 (삼성, 현대, LG)	9개*	2개 (삼성, LG)	1개 (LG)	2개 (한미, LG)	1개 (LG)	1개 (LG)	1개 (LG)

주: 삼성, 현대, 롯데, 국민, BC, LG, 외환, 신한, LG카드론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내부자료

#### 다. 카드론(신용대출) 방식

- 카드론 방식은 납세자가 카드사로부터 신용대출을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
  - 가맹점수수료를 대신하여 자금이체기일을 월단위로 설정하여 이체하는 방식으로, 매월 1~30일까지 납부한 세금을 익월 13일까지 이체
  - 일반적인 카드납부와 달리 일시불이 없는 할부 납부방식으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시불과 할부방식을 병행하여 실시
  
- 카드론 방식에 참가하는 카드사는 자금운용기간의 연장을 통한 수익 또는

할부수수료를 통하여 수익을 보전함

- 첫째, 자금이체기간을 월단위로 하여 매월 1~30일까지 납부한 세금을 익월 13일까지 이체하여 카드사는 자금운용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수익을 보전하거나,
- 둘째, 할부방법과 가능하도록 하여 할부수수료를 통하여 수익을 보전 받음

### 3. 국세 및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실적

#### 가. 국세

- 정부의 정책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세도 신용카드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카드론(Card Loan) 방식에 의한 국세 납부방안을 도입
  - 2000년 초 각종 징수·납부 및 체납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인터넷과 전화(ARS)에 의한 전자납부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신용카드 납부방안을 추진
  -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세는 카드론(Card Loan) 방식에 의한 국세 납부방안을 도입
    - 카드론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
    - 일시적으로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도 카드론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
- 전자납부 방법 중에서는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계좌이체 납부방법이 차지하며, 카드론을 이용한 납부실적은 미미
  -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를 이용한 납부 비율은 금액

기준으로는 2004년의 약 6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상반기에는 약 78% 수준으로 증가함

- 건수 기준으로는 2004년의 54.9%에서 2005년에 약 61.2%까지 증가하였다가 2007년 상반기에는 약 50% 수준으로 떨어짐
- 은행·우체국을 이용한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비율은 금액 기준으로는 2004년 31.8%에서 점차 낮아져서 2007년 상반기에는 21.6% 수준으로 떨어짐
- 건수 기준으로는 2004년의 45.1%에서 2005년에 약 38.7%까지 떨어졌다가 그 후 다시 증가하여 2007년 상반기에는 약 46.4% 수준으로 회복
- 카드를 이용한 납부실적은 금액 기준으로는 0.5% 수준으로 아주 미미함

<표 5> 전자납부 방법별 국세 납부실적(2004~2007. 6)

(단위: 건, 억원)

구 분	합계		은행·우체국 <계좌이체납부>		카드사 <카드론납부>		HTS <'02.4개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	508,088	78,078	228,973 (45.1)	24,838 (31.8)	111 (0.1)	2 (0.1)	279,004 (54.9)	53,238 (68.1)
2005	879,478	189,519	340,917 (38.7)	49,756 (26.2)	114 (0.1)	2 (0.1)	538,447 (61.2)	139,649 (73.7)
2006	1,385,510	260,748	572,151 (41.2)	62,678 (24.0)	271 (0.2)	6 (0.1)	813,088 (58.7)	198,064 (75.9)
2007.06	1,097,145	181,805	509,626 (46.4)	39,410 (21.6)	252 (3.4)	7 (0.5)	551,151 (50.2)	141,642 (77.9)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는 현재 카드론 방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세 납부실적은 2000. 7. 3~2000. 8. 31까지 시범사업 이후 2000년 9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여 2002년 4월까지 총 2,611건에 51억원을 기록하였으나 그 후 실적이 저조

- 2006년부터 조금씩 건수와 금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고, 2007년 7월 기준으로 358건으로 금액은 9억원에 불과

<표 6> 카드론 방식에 의한 국세 납부실적

(단위: 건,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7월
카드론	건수	111	114	271	358
	금액	2	2	6	9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나. 지방세

- 1997년 3월 경기도 의정부시가 최초로 일부 정기 납부분 지방세에 한하여 카드전표발행방식(물품구매방식)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점차 여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는 현재 약 180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05년 기준 전체 지방세의 약 12% 정도가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
  - 가맹점 방식은 74개 지자체에서 도입
  - 신용공여 방식은 117개 지자체에서 도입
  - 카드론 방식은 110개 지자체에서 도입
-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금액은 2005년 기준 전체 지방세의 약 12.6%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1개월 무이자 방식에 의한 지방세 납부실적이 가장 높음
  - 가맹점 방식에 의한 지방세 납부금액이 약 2,80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 약 0.8%,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실적의 6.6%를 차지
- 1개월 무이자 방식에 의한 지방세 납부금액이 약 3조 8,99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약 11.6%,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실적의 92.2%를 차지
  - 카드론 방식에 의한 지방세 납부금액은 약 1억 2천만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약 0.1%,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실적의 1.2%에 불과

<표 7>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현황(2005년 기준)

(단위: 억원, %)

	신용카드 방식				지방세 총계
	가맹점	1월 무이자	카드론	계	
납부액	2,802	38,999	509	42,310	334,910
비율	6.6	<b>92.2</b>	1.2	100	
지방세 대비 비율	0.8	11.6	0.1	<b>12.6</b>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내부자료

### Ⅲ. 외국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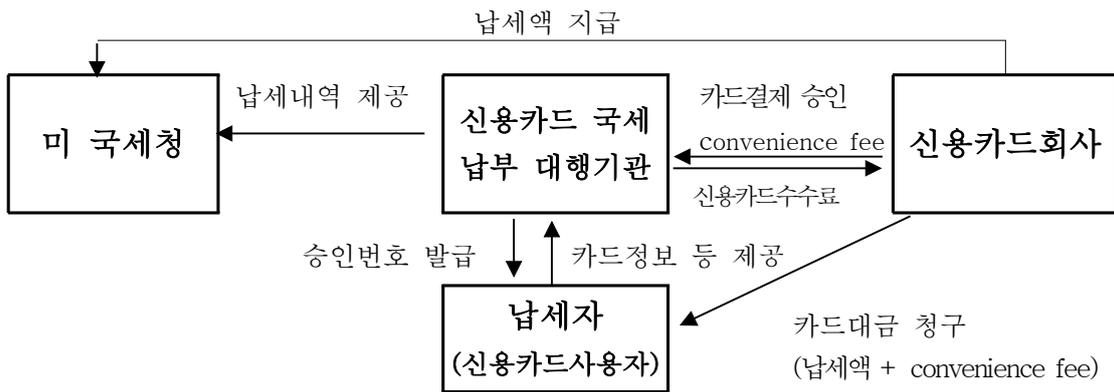
- 미국은 연방정부의 세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미 국세청(IRS)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세금납부에 대한 수수료나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미 국세청(IRS)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세금납부서비스 대행에 대한 비금전적 계약(Non-monetary Contract)을 체결해야 함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포인트, reward, cash-back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미국은 1999년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설립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개인소득세(예납세액 포함) 납부제도를 도입
  - 2006년 1월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연방실업세·사회보장세까지 납부 대상 세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sup>5)</sup>
  
- 미국은 납세자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신용카드 결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세납부 대행기관(service provider)을 지정
  - 대행기관은 온라인·전화에 의한 카드결제 방식으로 국세청에 납세자의 세금을 납부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납세자로부터 ‘convenience fee<sup>6)</sup>’를 수령
    - 대행기관은 convenience fee 중 일부는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신용

5)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

6) 일반적으로 납세액의 2.49%(최소 \$1)이나 관측행사도 진행(2% 이내)

- 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자금조달비·연체대손비 등)로 지급
- 국세납부대행기관(service provider)은 일반적으로 납세액의 2.49%(최소 \$1)의 수수료를 징수<sup>7)</sup>

[그림 5]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절차(미국)



<표 8> 미국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서비스 수수료 현황

서비스 제공기관 (Service Provider)	웹사이트(Web site)	수수료 (convenience Fees)	비고
LINK2GOV Corp.	incometaxpayment.com	\$2.95	직불카드·체크카드만 가능
	Pay1040.com Pay941.com Pay940.com Taxbrain.com	2.49% (최소 \$1)	-
Official Payments Corp.	Official Payments.com	2.49%~3.00% (최소 \$1)	-
N/A	File Your Taxes.com	3.93% (최소 \$1.25)	신용카드만 가능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내부자료

7) 국세납부대행기관 중 하나인 Official Payments Corporation사의 경우 수수료를 1.99%로 인하하는 관측행사를 진행

-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세액의 한도는 없고, 카드사용액 한도 내에서 결제 가능하며,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은행계좌의 잔고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 미국 국세청은 사전에 지정한 대행기관을 통해 납세업무를 처리할 뿐 납부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자가 국세 납부 대행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변상(reimburse)하지 않음
  - 미 국세청이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국세 납부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이유는 신용카드 세금납부로 인한 업무상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를 대행기관이 아닌 국세청이 직접 받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법적 근거 미비<sup>8)</sup>, 납세자의 불만 등)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Using plastic to pay taxes?>

- The News Tribune (2007.4.10일) -

**Q :** Why pay a fee to a third-party provider, rather than make a direct payment to the IRS ?

**A :** "In order to accept credit card payments, someone must pay the credit card companies a fee that generally ranges from 1 to 2 percent," *IRS regional manager Bill Cressman said.*

But the IRS is not authorized to do this, so the taxpayer pays the fee and the entire tax payment goes to the U.S. Treasury, he said.

**질문 :** 왜 국세청에 직접 지불하는 대신 제3자인 대행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냐?

**답변 :**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으려면, 누군가 신용카드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 IRS는 그러한 권한이 없으므로, 납세자가 수수료를 제3의 기관에 지급하고 국세청은 수수료를 제한 세금만 수령하게 된다

8)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점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구매자(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전가하지 않고 있는바, 미 국세청에서 직접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으면서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전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미국의 신용카드 국세납부액은 연방정부 일반 세수의 0.1% 내외에 불과하나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직불카드 포함)는 2005년 150만건으로 전년 대비 54.4%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약 2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것으로 추산(미 국세청)

<표 9>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현황(미국)

	'04년	'05년	전년 대비 증가율
건 수(만)	97	150	54.4%
금 액(억\$)	8.9	14	57.9%

자료: 재정부 내부자료

- 미국에서 납세자들이 수수료(convenience fee)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이유
  - 첫째, 신용카드 결제시까지 납세액 부담을 연기(delay out-of-pocket expenses)할 수 있고, 연체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는 (중)가산금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포인트 및 마일리지 등의 혜택(rewards, 항공권·숙박권 할인 등)을 들 수 있음
  - 셋째,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현금 또는 수표에 의한 납부에 비하여 편의성이 크기 때문
  
- 미국 제도의 시사점
  - 미국과 같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세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convenience fee를 수령하는 제도는 카드납부자와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국가가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손실, 국가가 수수료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때 발생하는 비난 가능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납부대행기관 운영이 정착될 경우 공공요금, 등록금 등 현재 카드납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영역까지 제도를 확대할 수 있음

## 2. 영국

□ 영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자납부 방안을 제공하고 있음

- Internet Banking, Telephone Banking 등을 이용한 납부
- 은행의 Giro를 통한 납부
- 우체국을 통한 납부(관세나 물품세에 대한 부가세 납부는 제외)
- 인터넷을 통한 직불카드로 납부(SA, PAYE, Stamp Duty Land Tax, 그리고 Pension Schemes의 납부만 적용가능)
- 국세청에 직접 납부

□ 온라인상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BillPay 결제시스템임

- Alliance and Leicester Commercial Bank에 의한 온라인상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BillPay 결제시스템이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직불카드만 사용가능
- BillPay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Self Assessment Tax, Employer PAYE/NICs, Stamp Duty 등이 있음
- BillPay를 통하여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은 0.01 파운드, 최대금액은 99,999.99파운드임
- BillPay는 카드발급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때 결제를 승인할 것인지 질문을 하고, 결제가 이루어지면 결제승인 메시지를 프린트하거나, E-mail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음

- 결제 가능한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사용가능한 직불카드는 Visa Debit Card, Maestro, Solo, Electron 등이 있음
  
- 영국은 직불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를 허용하되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함
  - BillPay system의 이용약관 제6조 제2항(Conditions of Use)에 의하여 납세자가 비용부담<sup>9)</sup>
  - BillPay System 이용약관 제3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접속 통신료 등 유사비용을 사용자가 부담<sup>10)</sup>

<표 10> 미국과 영국제도의 비교

구 분	미 국	영 국
국세납부 카드이용 여부	신용·직불카드 모두 이용가능	직불카드만 이용가능
결제 방식	전화, 인터넷	인터넷
세금 결제 대행기관	서비스제공기관 (Service provider)	Alliance & Leicester Commercial 은행 (BillPay 결제시스템)
수수료 부담주체	납세자	납세자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내부자료

- 9) The Customer undertakes fully and effectively to indemnify and keep indemnified at all times the Bank against all actions, proceedings, costs, claims, demands, liabilities and expenses whatsoever (including legal and other fees and disbursements) sustained, incurred or paid by the Bank directly or indirectly in respect of: (i) access to and/or use of the Service by the Customer or by Authorised Users; (ii) any information, data or material produced, transmitted or downloaded by the Customer or Authorised Users; (iii) any breach by the Customer or by Authorised Users of any of these Terms or of any law, code or regulation.
- 10) You are responsible for all telecommunications and similar charges incurred by You in gaining access to and using the Service

## IV. 국민여론조사 결과

### 1. 조사개요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국세 카드납부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sup>11)</sup>
  - 만 19세 이상 일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 지역/성/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 조사기간은 2006년 11월 11일 ~ 2006년 11월 12일(2일간)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pm 3.10\%$ point
  - 조사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 응답자 특성
  - 성별: 남성(49.3%), 여성(50.7%)
  - 연령: 20대<sup>12)</sup>(20.8%), 30대(24.1%), 40대(23.1%), 50대 이상(32.0%)
  - 직업: 자영업자(23.1%), 봉급생활자(37.4%), 주부(24.7%), 학생(8.5%), 무직/기타(6.3%)
  - 학력: 고졸 이하(57.4%), 대재(10.0%), 대졸 이상(32.6%)
  - 소득: 200만원 미만(29.2%), 200~400만원 미만(51.0%), 400만원 이상(19.8%)
  - 지역: 서울(22.2%), 부산/울산/경남(16.9%), 대구/경북(10.9%), 인천/경기(24.5%), 광주/전라(11.0%), 대전/충청(10.0%), 강원/제주(4.5%)

### 2. 조사결과<sup>13)</sup>

11) 국세청이 민간설문조사기관인 (주)메트릭스에 의뢰하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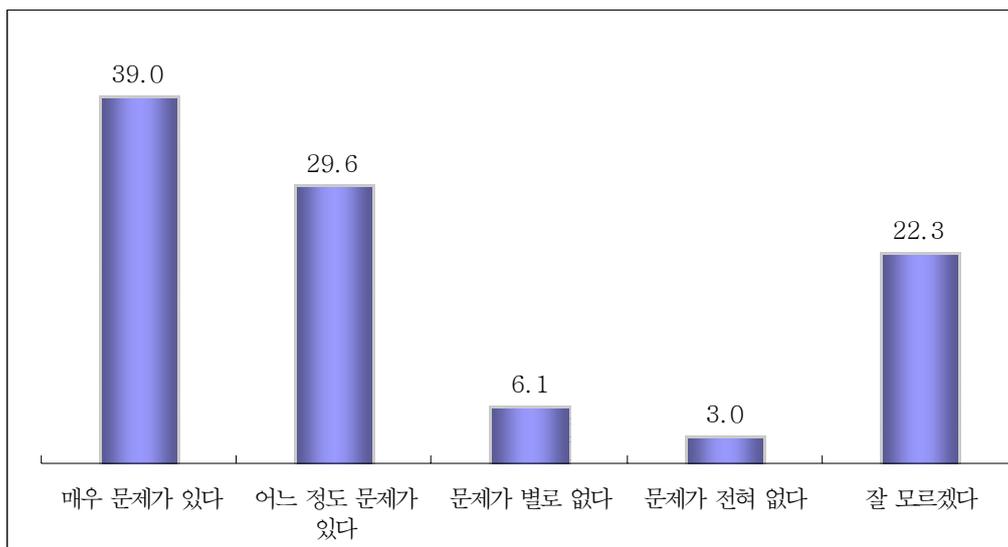
12) 만 19세 포함

13) 총질문항목은 7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국세의 카드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항만 기술하고, 연간 소득세부담액, 지방세 카드납부 경험, 국세 카드납부 도입과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그 수수료(연간 약 2,000억원 이상 국가예산 소요)는 결국 현금으로 납부한 사람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약 69%의 응답자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면 결국 현금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응답
  -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국세 카드납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계층에서 더욱 높음(77.0%)
  -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연령, 학력,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봉급생활자보다는 자영업자가 문제가 있다는 비율이 더 높음(73.6%)
  - 문제가 없다는 견해는 약 9.1%에 불과
    -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응답이 3.0%
    - 문제가 별로 없다는 응답이 6.1%

[그림 6] 국세의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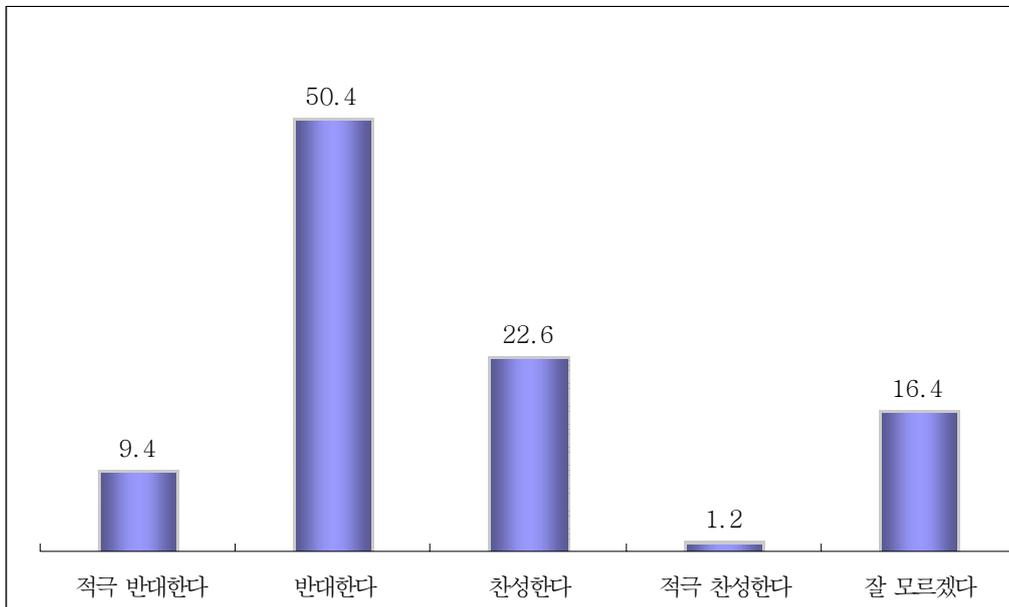


관련된 건의사항 등의 설문조사 내용은 생략

**2**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부담(예산지원)할 경우에 귀하가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의 카드수수료를 내주는 결과가 되는데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약 60%의 응답자는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 약 23.8%가 찬성
  - 소득이 낮을수록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국세의 카드납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계층에서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남(85.6%)
  - 카드수수료의 국가부담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계층에서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남(70.7%)
  - 지방세 카드납부 경험자의 반대비율이 높게 나타남(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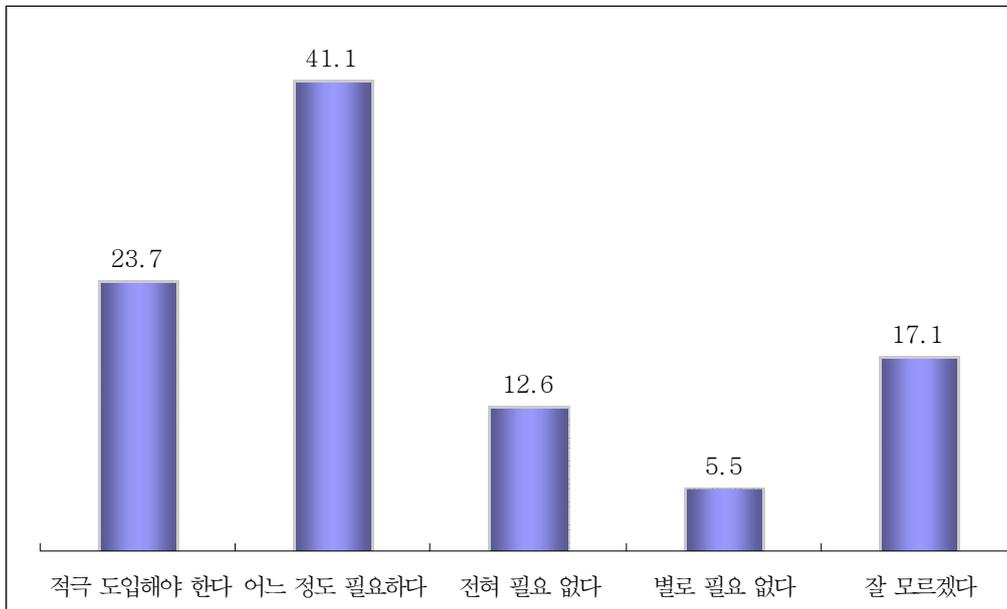
[그림 7] 카드수수료의 국가 부담에 대한 찬반 견해(%) - 전체



**3**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의 도입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약 65%의 응답자는 국세의 카드납부제도 도입에 대하여 찬성
  - 제도 도입에 부정적 견해는 약 18.1%
    - 전혀 필요없다(12.6%), 별로 필요없다(5.5%)
  -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방세의 카드납부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86.1%)
  -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카드수수료 국가부담을 반대하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25.9%)

[그림 8] 국세의 카드 납부방법 도입의 필요성(%)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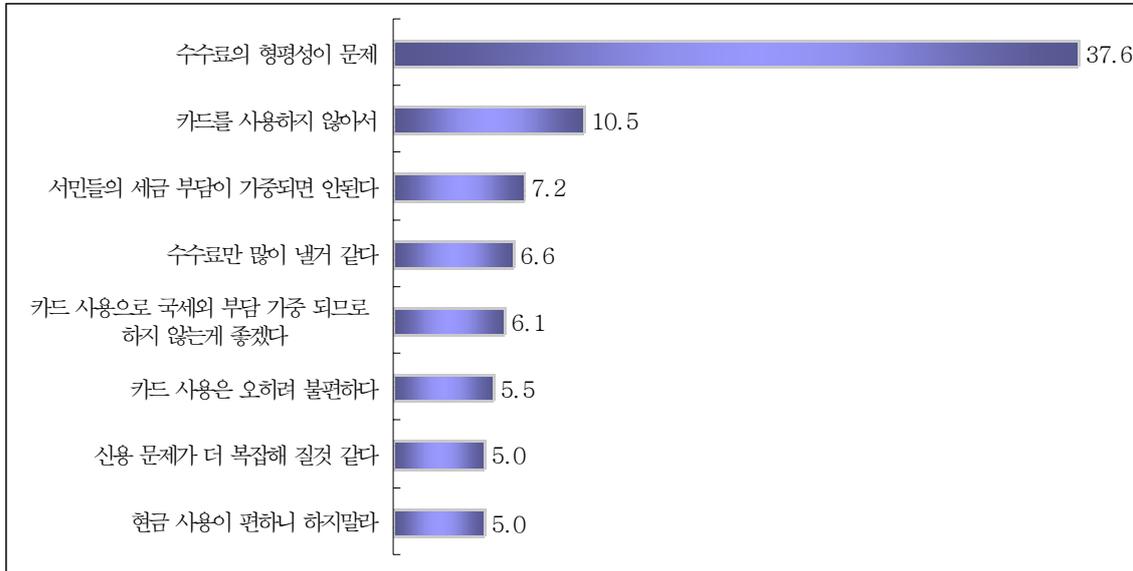


**4 (국세의 카드납부가 필요없다는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도 좋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의 카드납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 18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수수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37.6%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10.5%),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면 안 되

기 때문에(7.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9] 국세의 카드 납부 불필요 이유(%) - 필요 없다는 응답자 181명 대상



### 3. 시사점

- 국세 카드납부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65%)이 반대하는 의견(18%)보다 월등히 높아 국민들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한 경험이 있는 계층의 찬성비율은 월등히 더 높아(86.1%)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은 카드수수료 국가부담을 반대하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나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에 신중해야 함을 시사
  
- 국가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약 69%나 되고, 특히 국세 카드납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계층에서 77%가 나온 것은 카드납부제도를 도입하되 국가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

을 시사

- 특히, 국가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9%에 불과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형평성』을 지켜야 함을 시사

□ 구체적으로는 약 60%의 응답자가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반대하고, 약 24%만 찬성

- 적극 반대(9.4%)의 비율이 적극 찬성(1.2%)의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음
- 반대(50.4%)의견의 비율도 찬성(22.6%)보다 2배 이상 높음

## V. 도입시 고려사항

### 1. 재정부담 및 세출 자금운영상 현금흐름

#### 가. 가맹점 방식

- 국가가 가맹점수수료(1.5%)를 부담할 경우 과도한 재정부담이 예상됨
  - 2007년 예산(147조원)을 기준으로 약 10%가 신용카드로 납부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2,210억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되고,
  - 약 50%가 신용카드로 납부된다고 가정할 경우 1.1조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됨<sup>14)</sup>

#### 나. 신용공여 방식

- 신용공여 방식(1개월 무이자)은 세액의 국고입금이 지연되어 차입과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
  - 2007년 예산(147조원)을 기준으로 약 10%가 신용카드로 납부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1조원의 차입이 필요하고 매년 52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며,
  - 50%가 신용카드로 납부된다면 6조원의 차입과 2,58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sup>15)</sup>
- 신용공여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다면 그 규모는 매년 1,500억~7,8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게 됨

14)  $147\text{조원} \times 10\% \times 1.5\%$ (가맹점수수료) = 2,210억원  
 $147\text{조원} \times 50\% \times 1.5\%$ (가맹점수수료) = 1조 1,025억원

15)  $11.5\text{조원(월평균 세수)} \times 10\% \times 4.5\%$ (차입금리) = 520억원  
 $11.5\text{조원(월평균 세수)} \times 50\% \times 4.5\%$ (차입금리) = 2,587억원

- 또한, 신용공여기간만큼 매년 동일한 기간의 세수가 다음 해에 국고로 입금되므로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가 발생

<표 11> 2006년도 월별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세수	15.9	2.7	14.4	17.3	9.2	8.1	17.4	8.5	11.5	17.1	7.1	8.8	138

자료: 재경부 내부자료

## 2.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 현재 국세청은 현금납부(계좌이체 또는 국고대리점 수납)와 함께 다양한 전자납부제도를 운영
  - 2006년의 경우 전자납부에 의해서 26조 747억원이 수납되어 국세청은 전체 국세의 약 20%를 전자납부에 의해 징수

<표 12> 유형별 전자납부 건수 및 금액(2006 기준)

(건, 억원, %)

구분	은행인터넷	카드인터넷	은행ARS	카드ARS	은행ATM	HTS
건수 (비율)	474,260 (34.2)	271 (0)	14,440 (1)	0 (0)	83,451 (6.0)	813,088 (58.7)
금액 (비율)	60,419 (23.2)	6 (0)	294 (0.1)	0 (0)	1964 (0.8)	198,064 (76.0)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현금납부를 대체하고 있는 전자납부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반면, 국가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경우 전자납부자와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 신용카드에 의해 국세를 납부하는 자는 1개월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에 따른 각종 혜택을 향유하게 됨
-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편익이 납세자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이 국가재정으로 귀착될 경우에는 현금납세자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를 역차별하는 문제 발생

### 3.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는 신용카드를 물품 및 용역구입 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동법 제19조 제3항은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sup>16)</sup>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국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신용카드로 국세를 결제하는 것이 불가능함<sup>17)</sup>
    - 지방세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충돌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개월 무이자 방식(신용공여 방식) 등으로 변칙운영하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제약하고 있음

### 4. 「국고금관리법」과의 상충문제

- 「국고금관리법」은 수납된 국세는 지체 없이 국고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sup>18)</sup>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신용공여

16)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3항)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방식은 이러한 국고집중의 원칙에 위배

- 신용공여 방식은 카드로 국세 납부시 국고금이 한국은행에 1개월 늦게 집중되어 「국고금관리법」 취지에 위배
- 신용공여 방식은 자금흐름의 불일치로 인하여 막대한 자금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므로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재정운영상 문제가 발생

## 5. 카드사의 자금조달 능력과 참여 가능성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는 신용카드사의 막대한 자금조달 능력의 필요한바,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설정이 필요
  - 매월 약 11.5조원의 국세가 징수되고 있으므로 그 중 약 10%가 신용카드로 납부될 경우 신용카드사는 약 1조원 이상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함
  - 카드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 카드사 부실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카드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신용카드 납부세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신용카드사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연체 또는 대손에 따른 비용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보장하여야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있음

## 6. 기존 전자납부제도의 활성화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는 기존에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에게 제공

18) 국고금관리법 제12조 (수납기관)에 의하면 ①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취급시킨 경우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하며, 현재 D+2일 만에 국고에 집중되고 있음

하고 있는 인터넷, ARS, ATM, 카드론, Home Tax Service 등 다양한 전자납부방안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전자납부방안을 제공하여 납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최근 들어 전자납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6월에는 약 23%까지 상승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체 전자납부비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체납의 위험성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보다 다양한 전자납부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현금납세자를 포용하고자 하는 것임

## VI.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

### 1. 기본방향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첫째, 납세자의 납세편의성 제고에 있음
  - 둘째, 일시적 유동성 제약상태에 있는 영세한 개인납세자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증가산금<sup>19)</sup>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sup>20)</sup>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고 1개월 이상의 기한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 1개월 체납이 발생하면 가산금 3%와 증가산금 1.2%를 합하여 4.2%를 납세자가 부담
    -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개월(30일)이 초과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0.9%를 부담해야 함
  
-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19)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됨. 또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출국규제, 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불이익을 받음.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문제나 국가재정 부담 등을 감안할 때 국가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보다는 편익을 제공받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 카드 납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수료 부담이 납세자의 사적인 자금조달비용보다 낮아야 함
  
-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납부를 허용하되 미국의 사례처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설립하여 가맹점 방식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카드사의 자금상황 등을 감안하여 도입 초기에는 영세납세자의 편의에 주안점을 둬
  - 대상 세목은 소액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 단계적 도입의 필요
  - 카드사의 유동성 문제, 운영시스템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
  - 도입 초기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민생 및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세목으로 한정하며, 카드 납부세액의 범위도 일정금액 이하의 신고·고지분에 우선 적용한 후, 제도가 안착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2. 도입방안

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주체: 『수익자부담의 원칙』

-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미국과 같이 납세자가 카드납부대행수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sup>21)</sup>

- 납세자: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금 결제기간의 이익(26~53일) 이외에 자금조달비용 절감, 체납에 따른 불이익 등 편익을 향유하므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
  - 카드사: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영업활동이 매출증가(500만원 한도 설정시 1조 4,600억~14조 6,000억원 예상)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을 향유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를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1997년 4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그 후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부담(1.5~2.0%)의 증가와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지자체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행자부는 지속적으로 권고
- 1997년 4월: 행자부는 가맹점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자치단체별로 여건을 감안하여 대상세목을 확대·시행하도록 권고
  - 2001년 8월: 행자부는 가맹점 방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카드론 방식을 확대 시행하도록 자치단체에 권고
  - 2002년 9월: 행자부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신용카드납부제도(수수료가 없는 가맹점 방식 또는 카드론 방식)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적극 도입·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
  - 2004년 6월: 행자부는 자금이체기간을 적정한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자치단체에 권고

21) 국가는 직접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운영비용(시스템 구축비용과 인건비)의 절감과 체납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수 증가 등의 편익이 있을 수 있음

나. 납부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등 우선 적용

-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일시적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도입 목적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세 중에서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산화물 등 민생 및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세목에 우선 적용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유동성 제약 문제가 크지 않은 세목이고,
  - 법인세는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법인 대상 세목인 점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추가로 검토

<표 13> 2006년 세목별 신고·고지건수 및 납부세액

세목	부가	종소	양도	법인	상·증	합계
건수(천건)	8,183	2,526	628	534	109	11,980
금액(억원)	401,071	59,495	83,020	341,342	24,987	909,915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카드사 유동성 위기는 결국 그 부담이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카드사의 자금조달 능력을 고려해야 함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대상으로 하고, 신용카드에 의해 전 세액이 납부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카드사는 연간 약 46조원의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1% 내외)는 4,606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약 10%가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된다고 가정할 경우는 약 4.6조원의 유동성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1% 내외)는 46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

<표 14> '06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대상 카드수수료 부담

세목	건수 (천건)	금액 (억원)	수수료 부담(억원)			
			0.5%	1%	1.5%	2%
종소	2,525.7	59,495	297	595	892	1,190
부가	8,183.6	401,071	2,005	4,011	6,016	8,021
합계	10,709.3	460,566	2,302	4,606	6,908	9,211

자료: 재정부 내부자료

다. 납부세액의 범위: 일정금액 이하의 신고·고지분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의 기본 취지가 영세한 개인납세자의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이하 신고·고지분에 대하여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2006년에 징수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약 40조원, 6조원 수준
  - 신고·고지금액 500만원 이하를 카드 납부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87.05%, 종합소득세는 89.72%가 포함

<표 15> 신고 또는 고지금액 기준 비중

신고, 고지금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00만원 미만	80.37%	84.74%
500만원 미만	87.05%	89.72%
1,000만원 미만	90.15%	94.48%

자료: 재정부 내부자료

- 납부세액을 신고·고지금액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하고 전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1%) 부담은 1,468억원 정도로 추산
  - 납세자가 한도금액 이하의 10%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는 146억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표 16> 신용카드 납부한도액 설정시 카드수수료 부담

구간 (한도)	세목	구간 건수 (천건)	구간 금액 (억원)	수수료 대상금액 (억원)	수수료 부담(억원)			
					0.5%	1%	1.5%	2%
300만원 미만	중소	2,140	13,015	13,015	65	130	195	260
	부가	6,577	47,480	47,480	237	475	712	950
	<b>소계</b>	<b>8,717</b>	<b>60,495</b>	<b>60,495</b>	<b>302</b>	<b>606</b>	<b>908</b>	<b>1,211</b>
500만원 미만	중소	2,266	17,865	30,880	154	308	462	616
	부가	7,124	68,477	115,957	580	1,160	1,740	2,320
	<b>소계</b>	<b>9,390</b>	<b>86,342</b>	<b>146,837</b>	<b>734</b>	<b>1,468</b>	<b>2,202</b>	<b>2,936</b>

자료: 재경부 내부자료

#### 라.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대행기관』 설립 검토

-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납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맹점수수료 부담문제로 납세자의 수용성이 떨어짐
  - 이 방식은 국세청의 홈텍스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과 약 10여명의 인건비만 추가되면 운영이 가능
  - 하지만 가맹점수수료 부담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입의 큰 손실을 가져오고, 가맹점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제한과 국민의 비판적인 시각을 피하기 어려움
  
-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카드납부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세납부대행기관』은 국세청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설립되고,
  - 국세청의 홈텍스와 연계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 카드사·한국은행과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국세 수납 및 결제 매개역할을 수행
-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운영될 경우에는 카드사 간 수수료 경쟁을 통해 사실상 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상당부분을 인하하는 효과(1% 내외의 수수료)를 가져올 수 있음
- 지방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약 40% 이상이 할부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의 경우도 할부수익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카드사는 카드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일리지 및 포인트 혜택(0.5~2%)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설립될 경우 판촉활동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국세납부대행기관과 체결하는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매출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 따라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및 포인트 혜택을 부여하기보다는 가맹점수수료를 경쟁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sup>22)</sup>

###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 구조

-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 시스템의 골격
-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1~1.5%)를 수령하며,
  - 카드사에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1% 내외)를

<sup>22)</sup> 현재 가맹점수수료가 높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마일리지, 각종 포인트 등 benefit program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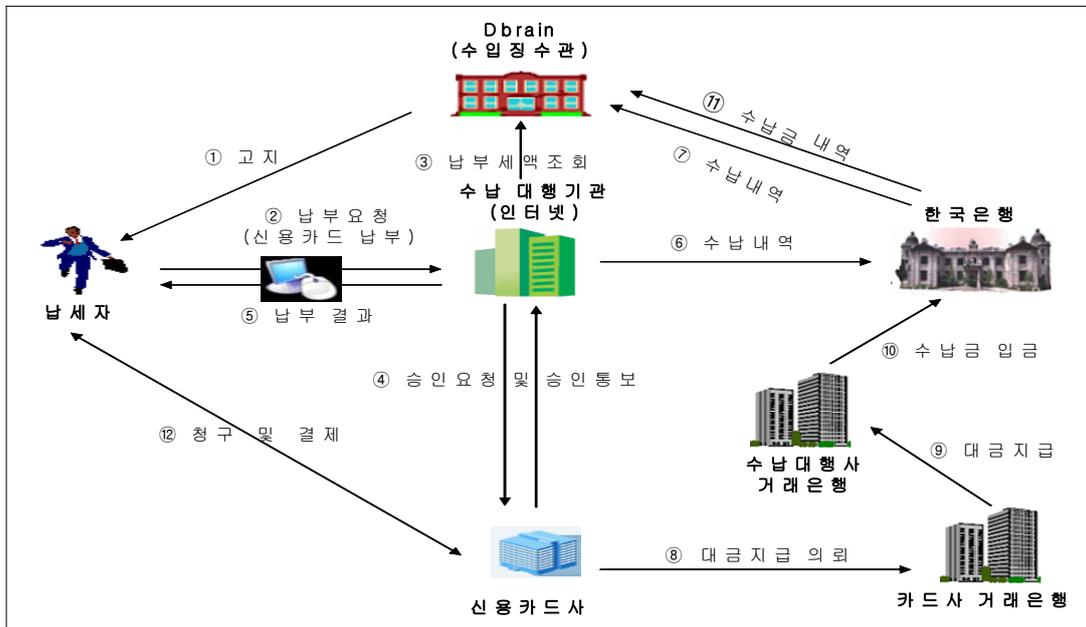
지급

예) 100만원의 국세를 납세자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 ⇒ 납세자는 101만원(국세 100만원 + 납부대행수수료 1만원) 결제
- ⇒ 대행기관은 1만원 중 카드사와 약정한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
- ⇒ 납세자는 1만원을 비용으로 처리
- ⇒ 납세자의 실제부담은 6,000~9,0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

□ 대행기관은 향후 등록금, 공과금, 벌금, 과태료 등 현재 신용카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역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그림 10] 국세수납 흐름도



## VII. 결론

- Adam Smith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공평성(Equality), 확실성(Certainty), 편의성(Convenience), 경제성(Economy)을 들었음
  - 현대의 생활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며 복잡다단해졌지만 Adam Smith의 제안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됨
  - Adam Smith가 주장한 편의성(Convenience)은 세금은 납세자가 납부하기에 가장 편한 시기에 가장 편한 방법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임<sup>23)</sup>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세원칙에 부합하고 그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신용카드/직불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약 65%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음
    -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는 18% 정도에 불과
    - 카드수수료의 국가부담을 반대하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이 높으며, 카드 납부제도의 도입이 필요없는 이유로 “수수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가장 높게 나옴
  - 따라서 납세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국고금관리법」상의 국고집중의 원칙을 준수하고 회계연도의 불일치로

---

23) Every tax ought to be levied at the time, or in the manner, in which it is most convenient for the contributor to pay it.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점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

- 신용공여 방식은 세액의 국고입금이 지연되어 『국고금관리법』상의 『국고 집중의 원칙』 과 위배
  - 지방세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2월 28일로 되어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1개월 신용공여 방식이 문제가 없음<sup>24)</sup>
  -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 국고입금 수납기한이 1월 15일이기 때문에 1개월 신용공여 방식은 문제가 됨<sup>25)</sup>
- 신용공여 방식은 자금흐름의 불일치로 막대한 자금을 국채발행을 통하여 조달해야 하므로 회계연도의 불일치에 따른 재정운영상의 문제 발생

□ 우리나라도 미국·영국 등 선진국처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불카드에 의한 납세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직불카드의 평균수수료는 약 1.5%(1%~2.0%)로 신용카드에 비하여 낮으며, 카드납부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할 염려가 없음
- 직불카드의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로 전환할 경우 카드납세자의 수수료

24)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제8조 (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한다.

25)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5조 (수입금의 수납기한) ①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 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1. 출납공무원이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한 수입금을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등에 납입하는 경우
2.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부담이 신용카드에 비하여 크게 낮아질 수 있음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는 『수익자부담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함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자금경색(temporary liquidity constraint)으로 인한 체납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 부담은 그 수익자인 카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
  -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봉급생활자와 현금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자영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을 저해
  - 미국·영국 등 신용/직불카드에 의한 납부를 허용하는 선진국에서도 수수료 부담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약 69%가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면 현금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응답
  - 수수료를 카드납부자가 부담하더라도 체납시 부과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과 관허사업규제, 출국규제, 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불이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
  
- 일반 상거래에서 가맹점수수료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
  - 최초에 신용카드매출 비율이 낮았을 때에는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았으나,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카드매출 비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세 중에서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산화물

등 민생 및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세목에 우선 적용

-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일시적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 상태에 처한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일차적 목적임
  -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양호한 납세대상 세목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일시적 유동성 제약 문제가 크지 않은 세목

□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는 일정금액 이하의 신고·고지분에 대하여 우선 적용

-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가 영세한 개인납세자의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일정금액 이하 신고·고지분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 후에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납세자들이 국세 납부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사용한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함

□ 미국의 사례처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설립하여 국민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함

-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카드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할 경우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제한과 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회피하기 어려움
- 영국에서도 국세청이 Alliance & Leicester Commercial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BillPay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국세 납부를 대행하도록 함
  - 수수료는 전적으로 납세자가 부담
-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설립할 경우 카드사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선정이 필요함
  -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관여할 경우 수수료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도 1997년 4월 가맹점 방식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자치단체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행자부가 지자체의 수수료 부담 없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지방정부도 초기에는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실적이 미미하였으나, 최근 들어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부담과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
  - 2001년 8월 가맹점 방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카드론 방식을 확대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 2002년 9월 수수료 부담 없는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여건에 맞게 적극 도입할 것을 권고
  - 2004년 6월 자금이체기간을 적정한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수수료 없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하도록 권고
  
- 지방세의 경우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며,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행자부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수수료를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행자부의 권고 및 지방의회의 요구로 현재는 카드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체납세금만 허용하는 등 그 이용범위를 축소하는 상황
  - 지방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도 초기부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지방세 카드 납부제도의 실상을 납세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의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이 필요

## 참고문헌

- 김재진, 『과표현실화를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방안』, 『재정포럼』, Vol. 30, 한국조세연구원, 1998.
- \_\_\_\_\_,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방안 및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9. 9.
- \_\_\_\_\_, 『국세,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실태 및 정책방향』, 『재정포럼』, Vol. 75, 한국조세연구원, 2002.
- \_\_\_\_\_,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11.
- 김재진 · 한상국 · 김진수,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1. 3.
- 김재진 · 전승훈, 『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세행정 개선방향』, 『재정포럼』, Vol. 69, 한국조세연구원, 2002.
- 김재진 · 김진수 · 홍범교,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분석 및 대책』, 한국조세연구원, 2003. 2.
- 박동규, 『카드거래 감세제도 왜 필요한가?』, 『신용카드』, 한국신용카드협회, 1995. 9.
- 배준호, 『신용카드 이용확대와 세무행정의 과학화』, 『신용카드』, 한국신용카드협회, 1996. 6.
- 서근우, 『신용카드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7. 4.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내부자료』.
- 이정환, 『신용카드의 기능에 도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들』, 『신용카드』, 한국신용카드협회, 1996. 3.
-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카드업 발전방안』, 1999. 4.
- 한국신용카드협회, 『신용카드』, 각호.

Australia Market Credit Card Transaction Analysis for the period 1 January 1997 to 31 December 2000.

Australia Market Debit Card Volume Analysis for the period 1 January 1997 to 31 December 2000.

Australian Taxation Office Homepage, "Income Tax: Credit Card Receipts: Documentary Evidence Required to Substantiate Certain Expenses," IT 2482.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Summer 2000.

Debit and Credit Card Schemes in Australia: a Study of Interchange Fees and Access, October 2000.

Debit vs Credit Volume Analysis for the period 1 January 1997 to 31 December 2000.

Lewis Mandell, *The Credit Card Industry*, Boston : Twayne Publishers, 1990.

미국 국세청(IRS) 홈페이지 <http://www.irs.gov>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홈페이지 <http://www.hmrc.gov.uk>